



제1481호

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

1. 단체명칭 : 십대여성인권센터

2. 소재지 : 서울시 강서구 [REDACTED]

3. 대표자

○ 성명 : 조진경

○ 주민등록번호 : [REDACTED]

○ 주소 : [REDACTED]

4. 주된 사업

가. 청소년/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통합지원서비스 제공

나. 사이버포래상담원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

다. 청소년/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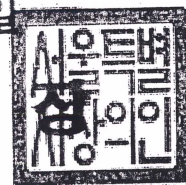
라. 청소년/사이버 성매매 피해 예방과 적극적 조기개입

마.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연대

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
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13년 11월 13일

서울특별시



비영리민간단체 변경신청서				처리기간	
				10일	
신청인	①성 명	[REDACTED]		②주민등록번호	[REDACTED]
	③대표자와의 관계	직원	④연 락 처	[REDACTED]	
	⑤주 소	[REDACTED]			
단 체	⑥명 칭	사이버포래상담실	⑦연 락 처	02)6348-1318	
	⑧소 재 지	서울시 강서구 [REDACTED]			
	⑨대표자성명	조 진 경	⑩대표자주민등록번호	[REDACTED]	
	⑪대표자주소	[REDACTED] [REDACTED] [REDACTED]	⑫대표자연락처	[REDACTED]	
	⑬주된 사업	· 청소년/성매매 피해자상담 및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· 사이버포래상담원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· 청소년/성매매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· 청소년/사이버성매매 성매매피해예방과 적극적인 조기개입 · 아시아네트워크구축 및 국제연대			
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. 2013 년 11 월 4 일 신 청 인 [REDACTED] (서명 또는 인) 서울시장 귀하					
<구비서류> 1. 등록변경사유서 1부. 2.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1부. 3.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(또는 정관) 사본 1부. 4.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. 끝.				수수료	
				없 음	

등록변경 사유서

단 체 명		사이버또래상담실
변경신청사항 ※해당란에 √ 표		☒ 단체의 명칭변경 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변경 ☐ 주된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☐ 주된 목적사업의 변경
현 행		사이버또래상담실
변경사항	변경일자	2013년 10월 14일
	변경내용	십대여성인권센터
변 경 사 유		본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‘사이버또래상담 사업’명과 단체이름이 중복되어 혼란이 가중됨. 따라서 본 단체에서 현재 수탁 중인 ‘사이버또래상담 사업’과 ‘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’를 포괄적으로 담을뿐더러, 앞으로 단체의 비전과 일치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함.

정 관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본 단체의 명칭은 ‘십대여성인권센터’라고 한다.

제2조 (위치) 본 단체는 필요에 따라 전국에 둘 수 있다.

제3조 (목적) 본 단체는 십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으로, 청소년/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 방지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연대를 통해 그 목적을 실현한다.

제2장 조직과 의무

제4조 (조직) 본 단체의 구성은 대표, 운영위원회, 감사, 사무국, 회원으로 한다.

제5조 (운영위원회)

1. 구성

본 단체의 활동에 전문적인 소견을 줄 수 있는 회원 4-5명으로 구성하고, 대표는 임기동안 당연직으로 참여한다.

2. 임명과 해임

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하며, 해임은 사유를 심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3. 역할

- 1) 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한다.
- 2) 단체의 예산, 결산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.
- 3) 총회 의결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.

4. 임기 :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5. 회의 :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운영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한다.

임시회의 소집시에는, 운영위원회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.

제6조 (감사)

감사를 두며 단체의 사업과 재정을 연 1회 감사한다.

제7조 (사무국)

1. 구성 : 대표와 사무국 약간 명을 둔다.

2. 역할

1)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단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무적인 일을 담당한다. 단, 사업집행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집행할 수 있다.

2)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.

3) 임기 : 대표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4) 직원 : 직원은 대표가 채용하며, 사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① 직원은 아동청소년성매매방지에 관한 특별한 소명과 자질을 가진 자로 채용

한다.

② 직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
제3장 사업

제8조 (사업의 범위) 아래 각 항의 사업을 주되게 진행하며, 그 외 제3조 (목적)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.

1) 청소년/성매매 피해자상담 및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: 청소년/성매매예방을 위해 인터넷 상담을 적극 활용하고, 성매매 피해상황에 노출된 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연계·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.

2) 사이버또래상담원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: 또래상담원을 양성하고 당사자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.

3) 청소년/성매매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: 청소년/성매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심각성을 홍보하고,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한다.

4) 아시아지역 아동청소년성착취정보센터 기능 : 아시아 지역의 아동청소년성착취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연대하며 그 활동의 중심이 되는 정보센터 기능과 연구출판 기능을 담당한다.

5) 아동성착취 국제네트워크 연대 및 국제적피해 지원활동 : 아동성착취의 국제적 피해양상을 모니터링하고, 다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 지원활동을 원활히 한다.

제4장 재정

본 단체의 재정은 지원금, 회비, 후원금으로 충당한다.

제9조 (지원금) 지원금을 주축으로 운영한다.

제10조 (회비, 후원금) 안정적인 단체운동을 위해 회비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.

제11조 (예산의 사용) 예산의 사용은 일반적인 회계규칙에 따른다.

제12조 (감사) 단체의 모든 재정과 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받는다.

제5장 부칙

1.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2. 이 정관 외 단체운영규정을 둔다.

2011년 12월 1일 제정 시행
2012년 11월 16일 개정
2013년 10월 14일 개정